

[별표 2]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선박안전관리사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
-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자격 및 경력 등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
- 응시자격서류 사본 제출
 - 응시자격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합격 이후에도 허위로 응시자격을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시 접수 불가
 - 첨부된 증명 서류 및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2. 응시 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취득연월일 및 자격증 발급번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격취득연월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해기사 면허증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
 - 1) 해기사 면허증 취득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 발급)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번호, 면허증 취득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2) 해기사 면허증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3) 승무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성명, 생년월일, 승선일, 발행청 직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정부24 발급 가능)
 - ※ 해기사 면허증 취득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발급)의 경우, 취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면 면허증 취득연월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 해기사 면허증의 경우, 면허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 승무경력증명서의 경우, 응시자격 면허등급에 해당하는 면허소지 후 최초 승선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 산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해기사 면허증 최초 취득연월일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예정

○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활용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2) 별지 서식 외 인정 가능한 경력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 단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 이외의 직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됨

3)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의 구분

구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본인작성) + 4대보험 가입증명서(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사실 확인서 첨부
4대 보험 미가입자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제출

- ※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본인사실 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조

4) 담당업무의 작성 시 유의사항(예시 참조)

-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 시 불인정)
- 직위, 직책, 소속명이 아닌 업무로 명시(미 기재 시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아 불인정)
- 담당 업무의 구체적 기재(단순 담당 분야만 기재 시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아 불인정)

직 무 분 야	업 무 내 용(예시)
선박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관공선 포함) 운항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운항' 관련 업무 직위명) 선장, 항해장(항해사), 기관장(기관사), 통신장(통신사), 운항장(운항사) · 군함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병과(직렬)에 한하여, 함정 운항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경력(승함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교) 함정, 병기 - (부사관) 갑판, 조타, 전담, 추진기관, 보수, 무장, 사통, 음탐, 정보통신, 전자, 전자전, 전기, 잠수 - (군무원) 선체, 선거, 항해, 함정기관, 잠수, 전기, 전자,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선사로 근무한 경력 ·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선박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의 위험물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선박안전 · 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부두선박안전감독)로 근무한 경력 ·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행안전, 해상교통안전, 선박교통관제, 순찰 또는 방제 등 해양경찰 직무를 수행한 경력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업체)으로 취업규칙 또는 임용규정상 다음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조선기술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조선 산업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
해양수산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에 선박, 해운, 해사가 포함된 국가기관의 부서에 근무한 경력 ※(예시)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 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근무한 경력 · 선박관계 법률(8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운법」,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명칭에 선박, 안전, 운항, 공무, 해사, 해상, 신조, 해무가 포함된 해운·조선회사의 부서에 근무한 경력(단, 취업규칙 또는 임용규정상 해기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한함) ※(예시)안전관리팀, 안전품질팀, 공무팀, 해사기획팀, 해무팀, 운항관리팀, 안전운항관리팀, 신조선관리팀, 해상인사팀 등 ·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및 이를 보조하는 직무(교관, 조교 등)로 근무한 경력 · 기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설립승인(허가)을 받은 법인(단체)의 해

	<p>운·항만·수산물관련 직무에 근무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업체)으로 취업규칙 또는 임용규정상 해기사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국가기관의 허가 또는 면허(등록포함)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 근무(해운항만 및 수산물관련업체) 임직원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

○ 승무경력증명서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
- ※ 승무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면 캡처 등 관인이 생략되거나 원본서류의 스캔이 아닌 서류는 불인정
- ※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며, 유급휴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을 가산(단,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 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단,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을 가산)
 -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하여 계산
 -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1년간 80% 이상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15일을 가산(단, 1년간 80% 미만으로 승무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을 가산)

3. 선택과목 면제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선택과목 면제 서류는 다음 서류만을 원칙적으로 인정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함) 면허증
-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함) 자격과 동일한 직종·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면허증
-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3급 이상의 기관사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 단, 해기사 자격증 취득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발급)의 경우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번호, 자격증 취득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 해기사 면허증 제출 시에는 면허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제출 시에는 자격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제출 시에는 자격의 종류,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교부일, 발행청 직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경력증명서

※ 뒤쪽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급	담당 업무 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해사안전법 제20조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응시자격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인)

확인자

소속 :

전화번호

직위 :

성명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 서류	구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종사중인 1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사실 확인서 첨부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폐업사실)증명원		

유의사항

※ 이 증명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승선경력 외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사안전법 제6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에 따라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① 주소 : 주민등록주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번호 : 자택 및 회사 또는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성명 : 한글로 적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 년월일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 소속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⑧ 확인자 : 해당기관의 인사 담당자

사 실 확 인 서

※ 본 사실확인서는 선박안전관리사에 자격증명에 필요한 경력사실이며, 아래의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경력 사실을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 (인)

입증인 인적사항

입증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수험자와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첨부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입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수험자와의 관계	수험자 응시자격의 증명 진위여부 확인	수집일로부터 5년간

※ 입증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선박안전관리사 응시를 위한 경력 사실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